골든라이프연금특약 약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 (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 (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에서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주계약의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종피보험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이 특약의 주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④ 주계약이 해지 (解止)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주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중 제 1급의 장해상태로 인하여 주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도 종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에는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⑤ 이 특약의 체결후에 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조 (종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취득 및 상실)

① 이 특약의 종피보험자의 범위는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이 특약의 체결 후 종피보험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 (이혼등)으로 제 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제 2항의 사유가 발생한 후 제 1보험기간중 새로이 제 1항의 종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 자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승낙한 경우 해당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 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제 1보험기간 (주계약의 연금 지급 개시전)중 주피보험자가 사망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실종선고가 있거나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 (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였거나, 장해분류표중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종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가족생활연금

2. 제 2보험기간 (주계약의 연금지급 개시후 부터 종신까지)중 주피보험자가 사망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실종선고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지급 개시후 제 11차년도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가족생활연금

3. 보험기간중 종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주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 유족위로금

4. 제 1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 1항 제 1호 및 제 4호의 경우 장해분류표중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 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④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의 경우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는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를 포함합니다.

제 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 (解止)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중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 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 1항 제 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2. 제 1항 제 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 1항 제 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9조 (보험금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 8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③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④ 해약환급금 및 제 2회 이후에 지급되는 가족생활연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 10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 (背書)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1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연금지급사유 발생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 특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정기예금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 12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6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납입 유예기간 (猶豫期間)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 1항 및 제 2항의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 7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 (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 1조 제 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8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종피보험자의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 (가족생활연금의 경우)
3.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4. 보험증권
5.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주피보험자 : 남자)

(기준 : 무약가입금액 10만원, 주피보험자연령 [55세형 : 35세 / 60세형 : 40세, 전기월납, 부부동시생존시)

구분	증액형				평준형			
	55세형		60세형		55세형		60세형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개월	369	0	496	0	554	0	738	0
1년	4,428	1,457	5,952	1,891	6,648	3,386	8,856	4,431
3년	13,284	6,532	17,856	7,423	19,944	12,789	26,568	15,680
5년	24,354	13,910	32,736	15,321	33,240	23,217	44,280	27,593
10년	57,564	37,018	77,376	38,663	66,480	51,184	88,560	57,431
15년	99,630	68,503	133,920	70,815	99,720	81,053	132,840	87,629
20년	151,659	112,689	203,856	115,997	132,960	112,689	177,120	115,997

(주피보험자 : 여자)

(기준 : 무약가입금액 10만원, 주피보험자연령 [55세형 : 35세 / 60세형 : 40세, 전기월납, 부부동시생존시)

구분	증액형				평준형			
	55세형		60세형		55세형		60세형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개월	118	0	152	0	177	0	224	0
1년	1,416	0	1,824	0	2,124	189	2,688	518
3년	4,248	788	5,472	1,306	6,372	2,696	8,064	3,707
5년	7,788	2,856	10,032	3,522	10,620	5,693	13,440	7,092
10년	18,408	9,071	23,712	8,666	21,240	13,398	26,880	14,146
15년	31,860	16,582	41,040	15,694	31,860	20,439	40,320	20,645
20년	48,498	27,696	62,472	26,550	42,480	27,696	53,760	26,550

(별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기준 : 최초 특약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가족생활연금	제 1보험기간 (주계약의 연금지급 개시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 1급 장해상태시 종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최초 특약보험 가입금액의 50%씩 종신 지급
	제 2보험기간 (주계약의 연금지급 개시후부터 종신까지)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지급 개시후 제 11차년도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제 2보험기간 개시후 제 11차년도 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최초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씩 종신 지급
유족위로금	종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주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최초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 주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는 제 1보험기간중에는 제1급의 장해상태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 2보험기간중에는 제1급의 장해상태를 포함합니다.

※.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는 제1급의 장해상태를 포함합니다.

(별표 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경제기획원 고시 제 30호, 1979.1.1 시행)중 "손상 및 중독의 외부요인에 대한 분류"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 철도사고	E 800 - E 807
2. 자동차 교통사고	E 810 - E 819
3. 자동차 비교통사고	E 820 - E 825
4. 기타도로교통기관사고	E 826 - E 829
5. 수상교통기관사고	E 830 - E 838
6. 항공기 및 우주교통기관사고	E 840 - E 845
7.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아니한 차량사고 (케이블카, 곤돌라 등)	E 846 - E 848
8.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등은 제외한다.	E 850 - E 858
9.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상 001내지 799에 분류가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E 860 - E 869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0.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다만,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제외한다.	E 870 - E 876
11. 불의의 추락	E 880 - E 888
12.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E 890 - E 899
13.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는 제외한다.	E 900 - E 909 (276.5)
14.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는 제외한다.	E 910 - E 915
15. 기타 불의의 사고 다만,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E 916 - E 928 (E 927)
16.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재에 의한 사고	E 930 - E 949
17.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	E 960 - E 969
18. 법적개입. 다만, 처형은 제외한다.	E 970 - E 978
19. 불의인지 고의인지 분명치 않은 상해	E 980 - E 989
20.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E 990 - E 999
21. 전염병예방법 제 2조 제 1항 제 1종에 규정한 질병	(E 978)

(별 표 3)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신 체 장 해
제 1급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장해등급분류 해설)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 (ㅁ,ㅂ,ㅍ), 치설음 (ㄴ,ㄷ,ㄹ), 구개음 (ㅈ,ㅊ), 후두음 (ㅇ,ㅎ)중 3종류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 (미음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4. "팔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 (팔은 어깨관절, 팔목,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